

(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-참조6)

2019. 11. 4.(월)10:00

본 회 의 장

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



성 남 시 의 회

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

-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!
그리고 선배, 동료 의원 여러분 !
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 입니다.
-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
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
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10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
“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” 등 총 9건에 대하여

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
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
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
○ 첫 번째,

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

“성남시 대한민국의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3·1운동 및 대한민국의정부 수립
100주년을 맞이하여, 3·1운동 정신 계승을 통해
주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관련
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○ 두 번째,

마선식, 신한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

“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
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으로
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임을 확인 받은 사람의
인정되는 날부터의 3개월이라는 기간은 부족하여

기간을 연장하여 1년으로 개정하고, 시설 입소자가 일정기간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항으로,

▶ 안 제4조제16호 중

“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 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” 를

“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(다만,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및 시설을 퇴소한 경우)” 로 “수정가결” 하였습니다.

○ 세 번째,

성남시장이 제출한

“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사망자 증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감소 및 수당의 지속적 인상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만80세 이상 국가유공자부터 우선 확대지원 검토에 따른 개정과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훈명예수당 환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규정을 삭제 하는 사항으로, 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○ 네 번째,

성남시장이 제출한

“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법」상 협의체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,

현행 조례에는 연임 횟수 제한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▶ 안 제11조제1항 중

“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 를

“각 협의체, 전문위원회, 실무분과 위원 및 위원장,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동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의 경우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” 로 “수정가결” 하였습니다.

○ 다섯번째,

이준배, 정 윤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“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노인의 식사배달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, 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○ 여섯번째,

성남시장이 제출한

“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(안)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동의안은 「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에 따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,

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○ 일곱번째,

성남시장이 제출한

“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「성남시 장사시설 조례」 제2조의 “연고자”의 범위 규정 신설과 추모원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중 연고자 범위를 삭제하고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반환규정 정비 계획에 따른 상충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, 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- 여덟번째,
성남시장이 제출한
“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(재위탁)
동의요구(안)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동의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, 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- 아홉번째,
성남시장이 제출한
“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일부개정에 따라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시설, 구조, 응급처치 교육대상 등 인용법령 조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, 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-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
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
심사한 결과인 만큼
심사보고 드린 “안” 대로 의결해
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,
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